

[별표 3의2] <개정 2012.5.22>

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·행위별 지역·조건·기준(제18조의2제3항 관련)

1.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의 경우

대상시설·행위	대상시설·행위의 지역	대상시설·행위의 조건·기준
가. 노천채굴	산지전용·일시사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	1)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. 다만, 별표 4 제1호마목3)·6), 제2호다목1) 및 제2호라목1)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 2)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5도 미만일 것 3)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.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가)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하여 채굴하려는 경우 나) 지식경제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하는 경우로서 안전채광 및 채광 후 복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)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채취하여 석재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을 것
나. 굴진채굴	제한없음	1)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. 다만, 별표 4 제1호마목3)·6), 제2호다목1) 및 제2호라목1)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 2)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채취하여 석재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을 것 3)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총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일 것
다. 광해방지사업		1) 별표 4 제1호·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) 「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이루어질 것

2. 송전시설·전기통신송신시설·풍력발전시설·풍황계측시설, 매장문화재 발굴의 경우

대상시설 · 행위	대상시설 · 행위의 지역	대상시설 · 행위의 조건 · 기준
가. 송전시설 · 전기통신송신시설 · 풍력발전시설 · 풍황계측시설	제한없음	1) 별표 4 제1호 ·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. 다만, 별표 4 제1호마목3) · 6) 및 제2호라목1)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 2) 자재 등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삭도 · 모노레일 · 헬기 등으로 운반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될 것. 다만, 별표 3의3 제3호가목에 적합하게 진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나. 매장문화재의 발굴	제한없음	별표 4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. 다만, 별표 4 제1호마목3) · 6), 제2호다목1) 및 제2호라목1)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※ 비고

1. 대상시설 · 행위의 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.
2. 제1호에 따른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의 대상시설 · 행위에는 폐석적치, 산물의 선별 · 가공 · 처리를 위한 시설 · 행위를 포함한다.
3.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5조제1항제1호의 통제보호구역의 산지가 있는 시 · 군 · 구의 1만제곱미터당 입목축적은 임업통계연보에 수록된 해당 시 · 군 · 구의 입목축적에 통제보호구역의 산지를 제외한 산지면적으로 나눈 값을 적용한다.
4. 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 중에서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5.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시설 · 행위별 지역 · 조건 ·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6.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 · 조건 · 기준을 적용할 때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를 준용한다.
7. 대통령령 제2251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중전의 규정에 따라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가 그 허가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노천채굴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접지역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그 지역을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로 보아 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